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1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182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854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14 선고 2011가합18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상고인G

판결 선고2014. 8. 26.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85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분할 전 경기 여주군 K, L, M, 분할 전 N 중 1/2 지분, 분할 전 O, P, Q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H, 국가 또는 T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피고에게 이전등록 되었으나, 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구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부동산'으로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들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은 1980. 7. 6. 사망하였고, J과 피고의 부친인 H은 1989. 7. 6. 사망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4. 12. 26.부터 1970. 9.

5.까지 사이에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등기가 될 때는 물론 그 이후 J와 H이 사망할 때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H의 소유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의 대습상속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H으로 복구한 것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H의 소유였는데 이를 H이 그의 아들 중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만약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구 지적법에 따라 임의로 복구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H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라면, H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을 여지가 없어,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또는 등기 말소의 청구권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박보영